

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8 선고 2019나202112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8 선고 2019나202112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18 선고 2018가합540563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운

피고,피항소인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

담당변호사 서현

변론 종결 2019. 9. 20

판결선 고 2019. 10. 18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8가합54056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/2지분에 관하여 2017.6.22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.12.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726,280,24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3,140,122원 및 각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/2지분에 관하여 2017.6.22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.12.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681,722,09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0,861,046원 및 각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문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■ 제1심 판결문제 3면이하의 제 1심공동 피고 A, 주식회사 B의 당사자 지위 표시를 일괄하여 "피고"에서 "제1심 공동피고"로 고친다.

■ 제1심 판결문제 8면제 6행의 "악화되다가"를 "악화되다가"로, 제 14행의 "대물 변제로서"를 "대물변제로서"로 각 고친다.

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"전화"를 "전환"으로 고친다.

3. 결론

원 고 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는 옳지 않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판사 박재영판사 이정훈

별지